

[별표4] 개정 후 전문

4단계 BK21 국제학 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2021.3.1. 제정

2022.1.1. 일부개정

2022.7.1. 일부개정

2023.3.1. 일부개정

2023.9.1. 일부개정

2024.9.1. 일부개정

2025.9.1. 일부개정

<4단계 BK21 국제학 교육연구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국제학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교육연구단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규정의 적용범위) 교육연구단은 운영위가 인정하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교육연구단 소속 및 구성) ① 교육연구단의 구성원(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직원 등)의 정의, 자격 기준, 권한 및 책임 등은 사업 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4단계 BK21 관련 타 교육연구단에는 소속될 수 없다.

제5조 (교육연구단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과 관리능력을 가진 자로 운영위의 재가를 거쳐 임명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교육연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4단계 BK21 사업의 총 운영기간(2020년 9월 1일~2027년 8월 31일)으로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의 징의를 거쳐 교체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휴직 및 사직

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교육연구단의 사업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교육연구단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8조제7항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 명이 교육연구단장 대리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행정직원) ① 교육연구단 행정직원의 임용/재임용 및 급여사항은 해당 시기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행정직원이 교육연구단의 발전과 능률향상을 위해 노력과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행정직원의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비 항목 내 간접비에서 집행한다.

[행정직원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신설 2024. 9. 1.>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교육연구단 운영 및 발전 기여도 (60)	교육연구단의 효율적인 행정, 재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등	60
업무 성실성 및 적극성 (40)	회의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수행의 성실성, 적극성 정도 등	40
합계		100

제 3 장 참여교수

- 제6조 (참여교수의 선정)**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 선정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수의 사업 참여 여부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참여교수 선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역량 (60)	고려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내 별표 [2-1],[2-2],[2-3]에 따라 산정	
교육역량 (40)	강의 개설 현황	20
	강의 평가	10
	지도학생 논문지도 실적	10
합계		100

제7조 (참여교수의 교체)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휴직과 제3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휴직 및 사직
3. 연구년 및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출장 중인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참여교수 성과평가) ① 교육연구단장은 매년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다.

- ② 참여교수 성과평가는 1년에 두 번(2월과 8월) 전체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 ③ 참여교수 성과평가는 연구역량, 교육역량 및 사업단 기여도를 고려한다. 참여교수의 성과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9. 1.>

[참여교수 성과평가 기준] <개정 2023. 9. 1., 2024. 9. 1.>

평가항목(100)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역량 (30)	KCI급 학술지 (1편당 15점)	30
	SSCI급 학술지 (1편당 30점)	
교육역량 (30)	글로컬 갈등관리 관련 강의 담당 (1과목당)	10
	참여대학원생 지도	
사업단 기여도 (40)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참여	30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 업무 지원	

제9조 (참여교수 성과급) ① 성과급은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참여교수 성과급은 1인당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
- ③ <삭제 2023. 9. 1.>

제 4 장 참여대학원생

-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 참여대학원생이라 함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소속의 학생 중 이 교육연구단 사업에 참여를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지원대학원생이라 함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매월 BK21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을 말한다.

-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① 참여대학원생이 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신청서를 교육연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기간 중 휴학, 제적 및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단 내에서 자격을 상실한 참여대학원생을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제12조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① 지원대학원생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나누어 선발한다. 자세한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2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개정 2023. 9. 1.>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탁월 (15점)	우수 (12점)	보통 (9점)	미흡 (6점)	저조 (3점)
연구계획서 (30점)	지원동기 (15점)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학업계획 (15점) ‘글로벌 갈등관리’와의 연관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저조 (2점)
이력서 (20점)	국제화 (10점) - 외국어 점수 - 교환학생 경험					
	교외활동 (10점) - 교외 인턴십 경험 - 교외 수상 경력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점 기준				
		4.25-4.5 (50점)	4.0-4.24 (45점)	3.75-3.9 9 (40점)	3.5-3.74 (35점)	3.25-3.4 9 (30점)
성적 (50점)	학업의 우수성					
합 계		100점				

- ②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 선발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개정 2022. 1. 1.>

2. 지원대학원생 선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우수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하며, 장학금 추가 지급 가능
 3.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해 국제대학원에서 모집하는 조교(행정/연구)로 근무 불가 <삭제 2022. 7. 1.>

4. 참여대학원생 중 Writing Editor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개정 2022. 1. 1.>

- ③ 박사과정(박사수료생 포함)의 경우 전공 분야를 고려해 3명 내외로 선발한다. 다만, 선발에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급 시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월별 급여일에 지급 (다만, 석사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인 지원대학원생에 한하여 학기별 지급 가능)

2. 지급 기간: 석사과정의 경우 6개월, 박사과정(박사수료생 포함)의 경우 1년

3. 지급 방법: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대학원생 계좌로 일괄 이체

4. 지급 금액: 석사과정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월 160만원 이상 (다만, 박사수료생은 월 130만원 이상) <개정 2023. 3. 1.>

⑤ 지원대학원생이 참여기간 중 휴학, 제적 및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학원생의 자격을 상실 한다. 이 경우, 교육연구단 내에서 자격을 상실한 지원대학원생을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 제13조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①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매 학기 사업의 시작(4월 1일, 10월 1일) 시점에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시점(2월 28일, 8월 31일)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참여 기간 및 참여 종료 이후에도 교육연구단장이 요구하는 경우 각종 연구실적 또는 장학금 지원, 취업 및 진학 내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제출)할 의무가 있다.
- ②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활동하는 기간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업 등으로 4대 보험 가입 상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⑤ 2021-2학기 이후 입학한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최초 참여학기에 ‘대학원신입생 강좌-인문사회계열(GRA511-00)’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신설 2022. 1. 1.>

제14조 (지원대학원생의 의무) ① 2021년 1학기 이후 입학하여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은 석 · 박사과정 모두 졸업 전 까지 ‘글로컬(glocal)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서’ 취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 교과목 수강 (석사과정 5과목, 박사과정 10과목)
 2. 자자체 인턴 프로그램 이수
- ② BK21 장학금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타 장학금의 기수혜자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나, 교육연구단에 장학금 수혜 내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학원생이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장학금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은 장학금 일부를 교육연구단에 환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22. 7. 1., 2023. 9. 1.>
- ④ 제1항제1호의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개정 2025. 9. 1.>

학수번호	교과목명	구분	관련주제
IRC020	국제경영	지식	전공필수
IRC030	국제경제	지식	
IRC040	국제정치	지식	
IRC070	국제개발협력입문	지식	
IRC050	한국근대사	지식	
IRC060	현대한국입문	지식	
IRC010	연구방법론	지식	
IRC013	연구방법론II	지식	
IRC015	집적연구방법론	지식	
IRC110	통계 데이터분석	실무	
IDC115	국제기구	실무	
IDC122	정책평가	실무	
IDC216	게임이론과 갈등관리	지식	
IDC520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계획	태도	
IDC521	국제개발과 위기관리	태도	갈등관리 정책 분석 일반
IIC335	통상안보 및 분쟁	실무	
IIC331	통상이슈 및 무역분쟁	실무	
IIC243	미시경제학	지식	
IIC421	통상정책	실무	
IPS116	국제관계이론 세미나	지식	
IPS117	국제관계 주요쟁점	실무	
IPS120	세계화의 주요쟁점	실무	
IPS218	글로컬(glocal) 갈등관리 세미나	실무	
IDC315	국제인권	태도	
IDC217	사회 불평등과 복지정책	지식	

IDC199	도시계획관리론	실무	
IIC418	통상정책현안	지식	
IIC425	통상 분쟁과 협상정책	실무	
IPS216	한반도 평화와 인간안보	지식	
IKS110	한국정치	지식	
IKS116	불평등과 한국정치	태도	
IKS122	한국사회의 이주와 인종	태도	
IKS310	한국의 문화	지식	
IKS320	한국의 사회변화	지식	
IKS412	한미관계	실무	
IDC290	환경관리론	지식	
IDC318	기업과 인권	실무	
IDC123	젠더와 개발	태도	
IDC221	지속가능발전교육	태도	
IDC416	환경과 무역 세미나	태도	
<u>IIC211</u>	<u>국제금융특강 I</u>	<u>지식</u>	
IIC242	거시경제	지식	
IIC317	디지털경제	지식	
IIC332	디지털통상 세미나 I	실무	
IIC333	디지털통상 정책 및 이슈	실무	
<u>IIC334</u>	<u>디지털통상 세미나 II</u>	<u>실무</u>	
IIC245	공공경제학 I	지식	
IPS211	국제평화	태도	
IPS315	인간안보	태도	
IPS415	남북한 관계	지식	
신규	국제갈등의 정치경제	지식	
IPS212	국제협상	실무	
IPS311	국제분쟁 분석 및 관리	실무	

[박사과정] <개정 2025. 9. 1.>

학수번호	교과목명	구분	관련주제
IAC701, 702	개별연구 I, II	지식	
IRC012	논문지도세미나 II	지식	
IAC801, 802	고급연구방법론 I, II	지식	
IRC010	연구방법론	지식	
IRC013	연구방법론II	지식	
<u>IRC015</u>	<u>질적연구방법론</u>	<u>지식</u>	
IRC110	통계 데이터분석	실무	
IDC115	국제기구	실무	
IDC122	정책평가	실무	
IDC216	게임이론과 갈등관리	지식	
IDC520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계획	태도	
IDC521	국제개발과 위기관리	태도	
<u>IIC335</u>	<u>통상안보 및 분쟁</u>	<u>실무</u>	
IIC331	통상이슈 및 무역분쟁	실무	
IIC243	미시경제학	지식	
IIC411	국제통상특강I	지식	
IIC412	국제통상특강II	지식	
IIC421	통상정책	실무	
IPS116	국제관계이론 세미나	지식	
IPS117	국제관계 주요쟁점	실무	
IPS120	세계화의 주요쟁점	실무	
IPS218	글로컬(glocal) 갈등관리 세미나	실무	
IAC771	고급세계화와 쟁점 세미나	태도	
IDC315	국제인권	태도	
IDC217	사회 불평등과 복지정책	지식	
IDC199	도시계획관리론	실무	
IIC418	통상정책현안	지식	
IIC425	통상분쟁과 협상정책	실무	
IPS216	한반도 평화와 인간안보	지식	
IKS110	한국정치	지식	
IKS116	불평등과 한국정치	태도	
IKS122	한국사회의 이주와 인종	태도	
IKS310	한국의 문화	지식	

IKS320	한국의 사회변화	지식	
IKS412	한미관계	실무	
IAC735	고급재정정책세미나 I	지식	
IAC736	고급재정정책세미나 II	지식	
IAC738	고급조세연구세미나 I	지식	
IAC761	고급동아시아연구세미나	지식	
IAC781-783	고급유럽연구세미나 I - III	지식	
IDC290	환경관리론	지식	
IDC318	기업과 인권	실무	
IDC123	젠더와 개발	태도	
IDC221	지속가능발전교육	태도	
IAC711-714	고급국제개발협력세미나 I - IV	지식	
IDC416	환경과 무역 세미나	태도	
IIC211	국제금융특강 I	지식	
IIC242	거시경제	지식	
IIC317	디지털경제	지식	
IIC332	디지털통상 세미나 I	실무	
IIC333	디지털통상 정책 및 이슈	실무	
IIC334	디지털통상 세미나 II	실무	
IIC245	공공경제학 I	지식	
IAC731	고급국제금융세미나	실무	
IAC741-743	고급국제통상세미나 I - III	지식	
IPS211	국제평화	태도	
IPS315	인간안보	태도	
IPS415	남북한 관계	지식	
신규	국제갈등의 정치경제	지식	
IPS212	국제협상	실무	
IPS311	국제분쟁 분석 및 관리	실무	
IAC751-754	고급국제평화안보세미나 I - IV	지식	

⑤ 글로컬 갈등관리 인증 교과목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호의 자자체 인턴 프로그램 이수 기관의 선정 및 이수 여부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자자체 인턴 프로그램 이수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교육연구단이 개최하는 학술 행사에 대한 참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⑦ 지원대학원생은 학위 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학위논문 트랙 선택

2. 박사과정: 논문 심사 전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⑧ 지원대학원생이 3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연구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대학원생이 3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제14조의 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① 교육연구단은 국내외 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학술논문을 게재한 참여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기준은 다음의 지급 기준을 따른다.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

학술지 구분	저자 구분	성과급
SSCI	주저자	50만원/편
	기타저자	30만원/편
그 외	주저자	30만원/편
	기타저자	15만원/편

* 각 금액은 편당 지급 가능한 성과급의 최대 상한액으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함.
* 주저자라함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함.

③ 성과급은 논문 게재일의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육연구단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기타 학술활동이나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기여가 있는 참여대학원생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제15조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① 교육연구단은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의 선발을 위해서 일정 기간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는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학위증명서 및 대학 졸업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1부 (경력이 있는 경우)

5. 추천서 1부 (추천인이 있는 경우)

③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운영위의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제16조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최대 4년 이내에서 재임용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여부는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기간 내 연구업적,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 및 기여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운영위에서 결정하며, 재임용 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9. 1.>

제17조 (신진연구인력의 사임) ① 신진연구인력은 임용 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임무 및 활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의 의결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신진연구인력의 의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교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은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신진연구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직원복무관례에 따른다.

제19조 (신진연구인력 재임용 평가) ① 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신진연구인력의 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9. 1.>

② 신진연구인력 재임용 시 연구역량 부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인상한다. <개정 2024. 9. 1.>

③ 신진연구인력 재임용 평가 및 급여 인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

[신진연구인력 재임용 평가 항목 및 급여인상률] <개정 2023. 9. 1., 2024. 9. 1.>

평가항목 (100)	재임용 평가		재임용 시 급여 인상률 (지난해 대비*)	
	세부 평가항목			
연구역량 (50)	A등급	SSCI/SCOPUS 1편 이상 또는 KCI 2편 이상	50	월 급여 2.0% 인상
	B등급	KCI 1편		월 급여 1.5% 인상
	C등급	KCI 1편 미만		월 급여 1.0% 인상
사업단 기여도 (50)	글로컬 갈등관리 교과목 관련 강의 담당		20	-
	교육연구단 주최 행사 참여		20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 업무 지원		10	

④ 재임용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신진연구인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

제 6 장 국제화 경비

제20조 (단기해외연수) ① 단기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기간이 14일 이내인 해외학술활동을 의미한다.

1. 참여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시 논문별 3명까지만 인정)
 2. 참여대학원생의 주요 해외 단기 연수프로그램 참가
 3. 참여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기타 연구 관련 해외 학술 활동
- ② 참여교수가 단독으로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단기해외연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에 참여교수가 공저자인 경우 해당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 참가
 2. 구두발표 10건 이상
 3. 구두발표자 중 외국 국적의 발표자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1/3 이상)
4.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 또는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와 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21조 (장기해외연수) ① 장기해외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15일 이상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해외학술활동을 의미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이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학술활동이 장기해외연수 지원대상인지 여부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22조 (장·단기해외연수생 선발) ① 장·단기해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지원서와 부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는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단기해외연수생 선발 기준]

평가 항목	평점기준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저조 (10점)
지원 동기 (30점)					
기대 학습효과 (30점)					
평가 항목	평점기준				
	탁월 (40점)	우수 (35점)	보통 (30점)	미흡 (25점)	저조 (20점)
글로컬 갈등관리 교육과의 연계성 (40점)					
합계	100				

② 단기해외연수의 경비 지급은 매 학기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지원 신청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비 지원 내역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며, 각 항목의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재비는 해당 연도 예산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항공료: 실비 지원 (이코노미석 / 연구비 카드로 선결제)

2. 체재비: 운영위에서 결정. 단, 본교 여비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개정 2022. 7. 1.>

3. 온라인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회 등록비 등을 체재비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④ 장·단기해외연수에 참가한 참여대학원생은 연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연구 단장에게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참여대학원 생에게 연수지원금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장기해외연수의 중도중지) ① 장기해외연수생이 연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교육연구단에 통보하고 운영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가 해외연수의 중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참여대학원생은 남은 연수 기간의 지원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연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장기해외연수생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중지한 경우 해당 장기해외연수생은 이미 받은 모든 지원금을 이 교육연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① “해외석학”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기관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자로 정규 대학 또는 그에 상응한 기관의 전임 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청의 목적이나 연구의 내용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자라도 초청할 수 있다.
② 해외석학 초청시 왕복 여비, 체재비 및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

제25조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 ① 교육연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 지역연구소 산하에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②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의 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맡으며, 임기는 교육연구단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교육연구단장 교체시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의 장도 함께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글로컬 갈등관리 연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에서 논의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제14조의 2 신설)
2.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13조제5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3.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22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개정, 제9조 삭제)
2.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8조제3항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14조제4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4.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14조제8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2 신설, 제8조, 제14조, 제19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